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문병훈 의원 (1명)

찬 성 자 : 오한아, 박기재, 노승재,
황규복, 김춘례, 안광석,
경만선, 김인호, 김호진,
최영주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 안내문의 게시 및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의 예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내문 훼손방지를 위한 관리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나. 안내문 훼손 시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 다. 안내문 부착 내용의 별표를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안내문 게시)”를 “(안내문 게시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의 “정기점검 과”를 “정기점검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문(제7조제1항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일	
관리부서	
연락처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별표] 안내문</u></p> <table border="1" data-bbox="815 461 1412 1133"> <tr> <td colspan="2" data-bbox="815 461 1412 618"> <p>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td> </tr> <tr> <td data-bbox="815 618 1015 719">관리번호</td> <td data-bbox="1015 618 1412 719"></td> </tr> <tr> <td data-bbox="815 719 1015 819">기 구 명</td> <td data-bbox="1015 719 1412 819"></td> </tr> <tr> <td data-bbox="815 819 1015 920">설치년월일</td> <td data-bbox="1015 819 1412 920"></td> </tr> <tr> <td data-bbox="815 920 1015 1021">관리부서</td> <td data-bbox="1015 920 1412 1021"></td> </tr> <tr> <td data-bbox="815 1021 1015 1133">연 락 처</td> <td data-bbox="1015 1021 1412 1133"></td> </tr> </table>	<p>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일		관리부서		연 락 처	
<p>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일													
관리부서													
연 락 처													